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임상법학교육

—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

박 광 동*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중 국 |
| II. 개념과 기능 | 1. 현 황 |
| III. 일 본 | 2. 구체적 예 |
| 1. 현 황 | 3. 과 제 |
| 2. 구체적 예 | V. 결 론 |
| 3. 과 제 | |

I. 서 론

2007년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률의 중요 내용을 보면 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와 정으로 4년제 일반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이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부(과)는 폐지된다.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학부성적(GPA: Grade Point Average)과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받드

*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법학박사

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입학자 중 비법학 전공자 출신 및 타 학교 출신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학생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사항을 대학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하여졌다.¹⁾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적(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종래의 법학교육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²⁾ 즉, 임상법학교육이나 시뮬레이션 교육 등의 법실무 중심의 법학교육형태가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임상법학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교육 형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임상법학교육은 종래 서양을 중심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태로서, 근래에는 일본³⁾과 중국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0051>(2007. 8. 9).

2)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과목은 학점이 없다. 합격 또는 불합격제로 운영된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0099>(2007. 8. 9)].

3) 법조양성에 있어서의 임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법과대학원 창설의 제언 당시부터 인식되고 있었다. 즉,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염두에 둔 법리론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실무교육의 도입도 아울러 실시하는 것으로 해, 실무와의 가교를 강하게 의식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실무교육과목군의 예로서 “법조윤리, 법정정보 조사, 요건사실과 사실인정의 기초,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면접교섭, Clinic, externship을 제시하였다”(四宮啓, “グローバル化する臨床法学教育”, 『法律時報』, 제79권 제2호, 日本評論社, 2007. 2, 4면; 松本克美, “日本における法曹養成とクリニック教育”, 『法律時報』, 제79권 제2호, 日本評論社, 2007. 2, 49면).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임상법학교육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근래에 임상법학교육을 도입한,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의 임상법학교육제도의 운영 및 그 문제점을 참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곧 시행될 실무와 이론의 가교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⁴⁾에서의 임상법학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개념과 기능

임상법학교육(clinical legal education)⁵⁾은 미국에서 발생한 제도로서,⁶⁾ 이는 종래에 강의실에서의 학문적 교육에 대하여, 학생에게 실제의 법률 문제를 접하게 해 법률상담이나 교섭, 법문서 작성, 사건의 수임 등의 법률실무의 일부를, 스스로 혹은 실무가의 보조자로서 실천시키는 교육이다.⁷⁾ 이러한 임상법학교육을 연구교육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하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고 배우는 연수가 아닌 실무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을 고양시켜,⁸⁾ 법률실무

4) 뉴욕대학은 skill(법률실무)을 중시하는 데 반해, 예일대학에서는 skill(변호실무)보다 법‘이론’을 배우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近江幸治, “イェール大学ロー・スクール”, 『法科大学院と臨床法学教育』, 成文堂, 2003. 12, 98-9면).

5) 법조양성교육과의 관련에서의 ‘클리닉 교육’이란, ‘임상법학교육’ ‘임상법교육’ 혹은 단적으로 ‘임상교육’ 등으로 불리는 일도 있다[松本克美(2007. 2), 앞의 논문, 49면].

6) 미국에 있어서의 임상법학교육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몇 번의 태동이 있었지만, 그것이 미국 전체의 로스쿨에 보급되는 출발점(springboard)이 된 것은, 1970년에 포드재단이 주요 로스쿨에 임상법학교육을 위한 조성금을 제공한 때부터이다. 캐나다의 임상법학교육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宮川成雄, 『法科大学院と臨床法学教育』, 成文堂, 2003, 4면).

7) 松本克美(2007. 2), 앞의 논문, 49면.

8) 한상희 교수는 이 교수법에 대해 “변호사인 교수가 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학생들은 사건의 해결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및 법조인에 대한 자기성찰적(self-reflective)·자기비판적(self-critical)인 관점을 양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⁹⁾ 결론적으로 임상법학교육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법조인에 필요한 능력과 가치관을 배양시켜 나가게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임상법학교육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학생에 대한 교육목적의 이론학습의 이해 심화 및 법률문제의 존재형태의 인식 등을 통한 현실적·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향상기능(교육적 측면), 둘째로, 무료·저렴한 법률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사회공헌적 측면; 정의교육의 일환)¹¹⁾의 기능, 셋째로, 교원에게 실무현장의 분쟁을 학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통한 이론연구의 발전(학문적 측면)이나, 실무의 현상의 개혁으로 연결되는 기능, 넷째, 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률가의 역할을 추구하는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¹²⁾

이러한 기능을 가진 임상법학교육은 주로 시뮬레이션 교육과 학외연수(externship)와 비교가 된다. 즉, 시뮬레이션 교육은 임상법학교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며, 그 수강인원에 있어서도 많은 수를 교육시킬 수 있다. 또한 강의자가 주의 깊게 교육계획을 세워 통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외연수는 임상법학교육과

‘의뢰인을 만났을 때 커피값을 누가 내야 하는지’ 같은 사소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체득하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인 교수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형태의 교수법을 유지하려면 적정수의 실무교수의 확보는 필수다[<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serial=30099>](2007. 8. 9)].

9) 宮川成雄(2003), 앞의 책, 2-3면.

10) 위의 책, 4면: 견해에 따라서는 임상법학교육은 현재진행형의 법률가를 배우는 과목 중의 하나이며, 변호사학의 일부라고 한다(田村智幸 편저, 『実践ローヤリング=クリニック』, 法律文化社, 2006, 1면).

11) シアン・ヤン/リー・チン민(訳・大坂恵里), “中国における臨床法学教育の現状と課題”, 『法律時報』, 제79권 제2호, 日本評論社, 2007. 2, 44면.

12) 亀井尚也, “法科大学院における臨床法学教育の意義と課題-実務家の立場から”, 『法律時報』, 제79권 제2호, 日本評論社, 2007. 2, 56면; 宮川成雄(2003), 앞의 책, 208면.

같이 실제의 의뢰자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학외연수는 정부의 법률가나 그 이외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고용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므로, 그 비용이 임상법학교육에 비해 저렴하고, 또한 임상법학교육센터의 클리닉은 full-time의 임상교원에 의해 지도가 되는 데 반해, 학외연수는 그렇지 않다. 또한 학외연수는 학내 임상법학교육과 달리 실체법에 관한 세미나를 수반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¹³⁾

Ⅲ. 일 본

1. 현 황

일본의 전체 법과대학원 74개교 중에 임상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52개교이고, 학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59개교에 미치고 있어, 임상교육은 수적으로는 상당히 보급되어 있다. 다만, 대부분의 법과대학원에서는 법률상담을 학내에서 실시하거나,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견학시켜, 관련되는 법적 문제점을 논의하는 형태가 많다. 이에 반해 학내에 법과대학원 부설의 법률사무소를 마련해서 본격적인 법률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학내부설 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한 사건에 학생을 관여시키고 있는 곳이 많다.¹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적인 클리닉

13) 宮川成雄(2003), 앞의 책, 24-25면.

14) 早稻田나 大官法科大學院에서는 민사클리닉뿐만 아니라 형사클리닉에 전임교원을 배치해서 실시하고, 실무적으로도 현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國學院, 東海, 獨協, 明治法科大學院이 합동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부야 공공법률사무소의 클리닉에서는, 학생이 사건을 담당하는 실무 활동과 법학 연습적인 수업을 조합시켜서 전개하고 있다.

활동을 통해서 지역봉사나 사회공헌형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법과대학원¹⁵⁾ 및 각종 클리닉이나 학외연수에 시뮬레이션을 혼합한 종합형의 임상교육¹⁶⁾ 형태도 있다.¹⁷⁾

2. 구체적 예

가. 와세다(早稻田)대학 임상법학교육

와세다대학의 임상법학교육은 실무와 이론의 가교라고 하는 법과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방법이며, 법과대학원이 법조인 양성기관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기치 아래, 학생에게 임상교육에 참가를 시켜, 현실적인 법을 배우게 하고 법률가로서의 책무를 체득하게 한다는 기본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무가와 연구자 교원에 의한 교원조직을 구성하였고, 학생의 실질적·주체적 참가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임상법학교육을 법률클리닉·시뮬레이션·학외연수의 3가지 형태로 전개하면서, 각 분야에 있어 전문화된 클리닉의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클리닉의 유형으로 형사클리닉, 가사사건클리닉, 젠더(사회적 性)클리닉, 노동클리닉, 지적재산클리닉, 외국인법클리닉, 헌법클리닉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될 예정이다.¹⁸⁾

15) 변호사 과소지역인 縣內 낙도에 출장법률상담 실습에 임하고 있는 鹿兒島大學클리닉,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나 성폭력(sexual harassment) 등의 문제에 대해 인권 옹호의 입장에서 임하는 立命館大學의 ‘여성과 인권클리닉’, 학생 스스로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의 활동을 전개하는 大官法科大學院의 정보공개클리닉, 자치단체의 정책입안도 지향하는 神奈川大學의 지방자치·외국인인권클리닉, 주민운동과 연계해서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는 早稻田大學의 행정법클리닉 등.

16) 中央大學이나 關西大學法科大學院 등.

17) 亀井尚也, 앞의 논문, 55-56면.

18) 宮川成雄(2003), 앞의 책, 208-264면; <http://www.waseda.jp/law-school/jp/about/education/clinic01.html>(2007. 8. 9).

나. 關西大學法科大學院의 나카시마(中之島)법률 클리닉

법률클리닉의 수업은 1학기에 2학점의 과목으로서, 2학년의 2학기 이후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1명의 교원(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실제로 실무에 종사하는 교원)과 3명의 수강생이 1클래스를 구성해, 90분 수업을 14회 실시하게 된다. 일주째의 첫 수업부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60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행해진 법률상담을 되돌아보고, 그 법률상의 문제점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교원과 수강생과의 사이에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그 다음 주에는 법률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수강생이 일주간 작성해 온 법률상담표(karte)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상담 직후의 검토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토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상담 수업과 토의 수업을 반복하여, 최소 5건 정도의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법률상담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행한 법률상담의 사안을 예를 들면, 소장(訴狀)이나 조정제기서(調停提起書),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하는 실무적 서면을 수강생이 기안해, 교원이 이것을 첨삭하는 학습을 2건 정도 실시한다.¹⁹⁾

3. 과 제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가 시작되어 3년을 지난 현시점에서, 임상법학교육의 발전에 대한 현상적 문제점과 저해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현상적 문제점은 일본에서의 임상법학교육에 대한 실무계와의 연계가 현재까지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임상법학교육은 물론 법과대학원제도 자체의 시행기간이 짧고, 둘째, 임상법학교육의

19) 木村哲也, “關西大學法科大學院の中之島リーガルクリニック”, 『法学セミナー』, No. 627, 日本評論社, 2007. 3, 35면.

성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셋째, 임상법학교육은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특수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의식²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²¹⁾

그리고 임상법학교육의 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을 보면, 첫째, 새로운 사법시험 준비와의 관계 문제이다. 종래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가 7~8할 정도의 합격률을 상정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법과대학원의 수료자로 새로운 사법시험의 불합격자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의 합격률은 3할대에 머무른다고 예상되고 있다.²²⁾ 이 때문에, 각 법과대학원은 새로운 사법시험 합격률에 신경을 쓰게 되고, 학생도 새로운 사법시험 준비를 최우선시하여 공부를 하게 되어, 새로운 사법시험과 관계가 적은 임상법학교육 과목의 이수에는 소극적이 된다.

둘째, 법과대학원 학생의 지위 문제로서, 현재 법과대학원 학생의 권한이 지극히 한정적으로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생은 사법연수생과 같이 지도변호사의 지도 아래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검사의 지도 아래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수습이나 형사변호인의 입회인 없는 접견에 동석하는 일은 모두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법연수생은 법률에 의해 비밀보지의 무(秘密保持義務)로 규정된 신분이지만, 법과대학원생은 법조인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학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이 크다.

셋째, 임상법학교육의 형태를 사건수임형과 상담형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현재 일본의 임상법학교육의 주류는 법률상담형 클리닉이다. 법률상담만으로도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지만, 학생이

20) 이러한 클리닉과목은 미국의 법학대학원 교육의 아래에서 발전해 온 것이지만, 단지 미국법에게만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법조양성교육에 있어서의 교육방법으로서 보편적인 의의도 가지는 것일 것이다(松本克美, 앞의 논문, 49면).

21) 四宮啓, 앞의 논문, 4-5면.

22) 일본의 현재 전국의 법과대학원수는 74교이고, 학생정원수는 각 학년당 5,800명 남짓 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는 사법시험위원회에 의하면 2006년도는 900 내지 1,100명 정도이고, 2007년도는 합격자의 목표수가 2006년 대비 2배 정도의 인원수였으나, 실제로는 1,009명이었다.

보다 주체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안에 대처하여, 그 법률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건 수임형이 그 만큼 교육효과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²³⁾

넷째, 커리큘럼상의 문제로 임상법학교육을 선택과목과 필수과목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교원체제나 시설, 재정상의 상황에서는 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많은 법과대학원에서는, 학외연수 혹은 시뮬레이션 과목에 대해 선택필수나 혹은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다만, 완전한 선택과목으로 하게 되면, 이를 이수하지 않는 학생도 증가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²⁴⁾ 또한, 임상법학교육 과목의 단위수는 2단위가 가장 많다. 이는 미국에서 주로 한 학기에 6~8단위, 연중 14단위로 하는 것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즉, 일본에서는 임상법학교육은 단위수의 계산도 소비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통상의 강의과목 등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은, 법과대학원의 핵심적 과목인 임상법학교육의 기능을 고려할 때, 단위계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현상적 문제점과 저해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즉, 첫째, 교원의 임상법학교육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시행을 통한 효과적인 지도 및 그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교육 내용에 있어서 법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함께 실무적인 입장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임상법학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하게 할 임상교원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한다.²⁵⁾ 그리고 넷째, 연구자교원을 법률클리닉에의 관여시키는 것이다.²⁶⁾ 다섯째, 일본

23) 松本克美, 앞의 논문, 51면.

24) 위의 논문, 52면.

25) 亀井尚也, 앞의 논문, 57면; 松本克美, 앞의 논문, 52-53면.

26) 현재 일본은 사건수임형의 법률클리닉에서 실제로 사건을 수임해, 그것을 법률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법과대학원이 생기고 있다. 즉, 九州大學・早稻田大學 등은 연구자교원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뒤에 관여하고 있으며, 立命館大學 등에서는 변호사

에서도 법과대학원생이 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 주가 정하고 있는 것 같은 학생실무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사법시험의 내용을 섬세한 지식이나 효율적인 사무처리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 및 사실을 정리하는 힘이나 법적 문제를 발견해 응용하기 위한 기초력을 보는 것 같은 것으로 해서, 합격자 수에 집착하지 않고 일정한 질을 가진 사람을 합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법수습과정과의 관계가 문제 되는데, 사법수습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견해처럼 사법수습과정으로 가는 사전적 학습과정으로 임상법학교육을 보아, 임상법학교육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IV. 중 국

1. 현 황

종래 중국에 있어서 법학교육은 비판적 추론이나 법률적 문제를 분석해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기본적인 법원칙의 암기를 중시하였고, 또한 전문적인 기능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부족한 반면, 많은 법학부 졸업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법률적 직업을 찾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분쟁시 그 해결요청은 많은 반면, 이를 해결해 줄 법률보조가 미흡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새로운 종류의 법학교육의 양식으로서 임상법학교육이, 포드재단(Ford Foundation)에 의해 중국에 도입되었다. 2000년 9월에 포드재단의 지원 아래에 임상법학교육이 북경, 무한, 상해에 있는 7개의 각기 다른 법학원에 도입되었고, 2002년 이후에

자격이 없어도, 사전연수나 사후연수에 연구자교원이 관여하고, 법적 지식의 정리·확인이나 새로운 이론문제의 검토를 행하고 있다.

중국법학회는 중국임상법학교육자위원회의 창설을 승인했다.²⁷⁾

현재 중국의 임상법학교육의 형태는, 공익소송클리닉, 노동자의 권리클리닉, 소비자의 권리클리닉, 여성의 권리클리닉, 공민권보호클리닉, 환경법클리닉,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클리닉, 커뮤니티클리닉, 종합클리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개개의 법학원은 개개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 클리닉을 창설한다. 법학원 중에는 복수의 클리닉을 창설한 곳도 있다.²⁸⁾

2. 구체적 예

무한대학의 임상법학교육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센터를 기반으로 2000년에 창설되었다. 최근에 무한대학의 법률클리닉의 교원들이 새로운 종류의 클리닉인 비송클리닉을 개설했다. 이 클리닉에 있어서는, 약간의 학생이 임상교원에 의해 감독되는 실무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선택되어, 사회조사기능이나 그 외의 임상기능이 훈련되었다. 그 후, 임상교원은 학생에게 커뮤니티를 조사해, 그 커뮤니티가 법적 권리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고 있다.

무한대학의 3단위의 법률클리닉 코스는, 수업 부분과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는 면담, 교섭, 공판전의 준비나 공판 기능, 법정보조사·법문서 작성, 구두표현능력, 심리적인 적응 및 전문직 윤리와 같은, 복수의 lawyering(면접교섭 등)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임상교원이

27)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은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법률전공 석사(법률석사)를 수여하는 교육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법률전공 석사과정의 창설은, 중국의 법학 교육이 전문직 교육으로 향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재학기간을 살펴보면, 전과(專科)법학교육의 재학기간은 3년, 본과(本科)법학교육의 재학기간은 4년, 석사과정 또는 법률전문 석사과정생의 대학원프로그램의 재학 기간은 2년부터 3년, 박사과정생의 대학원 프로그램의 재학기간은 3년부터 4년이다.

28) シアン・ヤン/リー・チンミン(訳・大坂恵里), 앞의 논문, 57면; 松本克美, 앞의 논문, 41-42면.

그러한 기능을 한사람 당 1개 내지 2개를 가르친다. 주된 방법은 role playing, 시뮬레이션, 세미나, 집단토론, 모의재판 등이다.

다음에 실천부분으로는, 학생은 사회약자권리보호센터(CPRDC: Center for Protection of Rights of Disadvantaged Citizens)의 일에 참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원의 감독 아래에서 학생은 의뢰자와 면담해 조언을 한다. 많은 경우에, 의뢰자는 학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조언과 자료만으로 만족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학생은 의뢰자를 대리할 것이고, 거기에 법원이나 중재소(仲裁所)에 출정해서 변호하는 것이나, 반대당사자와 교섭하는 것도 할 수 있다.²⁹⁾

3. 과 제

중국에 있어서도 임상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³⁰⁾

첫째, 임상법학교육상의 학생의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시민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즉, 변호사집무증을 가지지 않는 클리닉의 학생도 의뢰자를 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클리닉의 학생은 의뢰자를 대리해 변론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중재소에 출정할 수가 있지만, 그들의 증거조사의 권리는 자주 한정되고 제한되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는 통상 형사피고인을 대리해 변호인으로서 행위하는 일도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예산부족의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임상법학교육이 포드재단(Ford Foundation),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등의 기부에 의해 지원되

29) シアン・ヤン/リー・チンミン(訳・大坂恵里), 앞의 논문, 57면; 松本克美, 앞의 논문, 42면.

30) シアン・ヤン/リー・チンミン(訳・大坂恵里), 앞의 논문, 57면; 松本克美, 앞의 논문, 43-44면.

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임상법학교육에 자금이 지원될지, 지원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인가는 불확실하다. 즉, 클리닉의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법학원은 매우 적어서, 법학원 중에는 예산문제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 곳도 있다.

셋째, 임상교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비정규직이 주를 이루는 임상교원의 경우, 많은 시간과 학문적·실무적 정열을 임상법학교육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과제 성과율이 낮게 되어, 학교에서의 승진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V. 결 론

이와 같이 일본과 중국의 경우, 임상법학교육의 현실적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에서 임상법학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임상법학교육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임상법학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무계와의 연계 활성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인 임상법학교육도 중요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거나, 법과전문대학원을 수용한 대학의 학과별 특성을 살려 각 법과전문대학별 전문 임상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임상법학교육의 성과 및 임상법학교육이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특수한 교육이 아닌 생활에 접해 있는 교육방식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상법학교육의 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에 대해서 보면, 첫째, 새로운 사법시험 준비와의 관계 문제이다. 이는 임상법학교육에 있어서 상담형과 사건수임형을 혼합하여 시행한다면 상담을 하거나 사건수임에 참여

하면서 법률과 판례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법시험의 문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문제유형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지위 문제로서,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에게 법조인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임상교원의 지도·감독 아래 일정범위 내에서 법률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이때에는 임상교원의 철저한 역할분담 및 계획에 의한 시행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학생이 참여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법률사건처리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건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학생실무규칙(student practice rules)으로 불리는 재판소 규칙과 같은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커리큘럼상의 문제로 임상법학교육을 선택과목과 필수과목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과목으로 선택함이 법률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수시간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론과목과 임상과목의 편성에 있어서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과목군의 구조화를 통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의교재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투고일 2007년 7월 24일, 심사일 2007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 2007년 8월 3일)

주제어 : 임상교육, 로스쿨, 법학교육, 법조인

[Abstract]

Clinical Law Education to Train Judicial Officers

— Focused on Japan and China —

Kwang-Dong Park*

As the ‘Bill of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had been passed through the main confer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 2007. It is prepared with the foundation to open the first law school in Korea on March 2009. Major terms of the Act allows the general university with 4-year curriculum (including graduate school) to establish the law school with 3-year master’s curriculum of specialized graduate school on March 2009. And every university that establishes the law school shall abrogate the existing college (department) of law. It requires to mandatorily reflect the grade point average (GPA) and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an eligibility test for the law school, into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necessarily include the foreign language ability as the entrance information.

With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re will be a lot of changes on the existing pattern of law education in the future. Specifically, legal practice oriented law education pattern such as clinical law education, simulation and the like will be activated. Especially, the clinical law education out of them seems to be such a education pattern to be newly tried in Korea upon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is clinical law education has been being excised for

* Visiting Research Scholar of Tokyo University

the law schools mainly in the western countries and also executed in Japan and China.

This paper had looked into the pattern of the clinical law education to train the judicial officials in Japan and China. In conclusion,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education pattern like that, it is necessary for supporting a diverse range of related systems and substantial contents of education.

Key Words : clinical law education, law school, law education, judicial officers